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기간 : `18.11.26 ~ `19.04.07

- 무인CCTV : `19.03.25 ~ `19.04.07

- PDA, 시민신고 등 : `19.11.26 ~ `19.03.24

나. 통보건수 : 롯데렌탈(주) 등 5,11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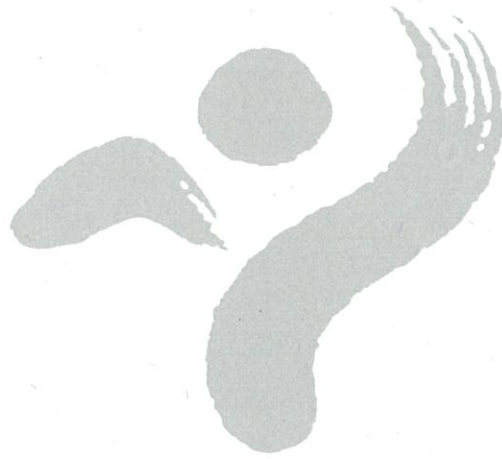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 분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
	계	무인CCTV	PDA	시민신고 등
금 회	5,114	4,905	87	122
전화 누계	31,651	30,911	154	586
누 계	36,765	35,816	241	708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4.10 ~ `19.04.30(20일간)

붙임: 사전통지 등기발송 내역 1부. 끝.



서울특별시

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4/10 오종범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8282 () 접수 ()
우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부분공개(6)